

case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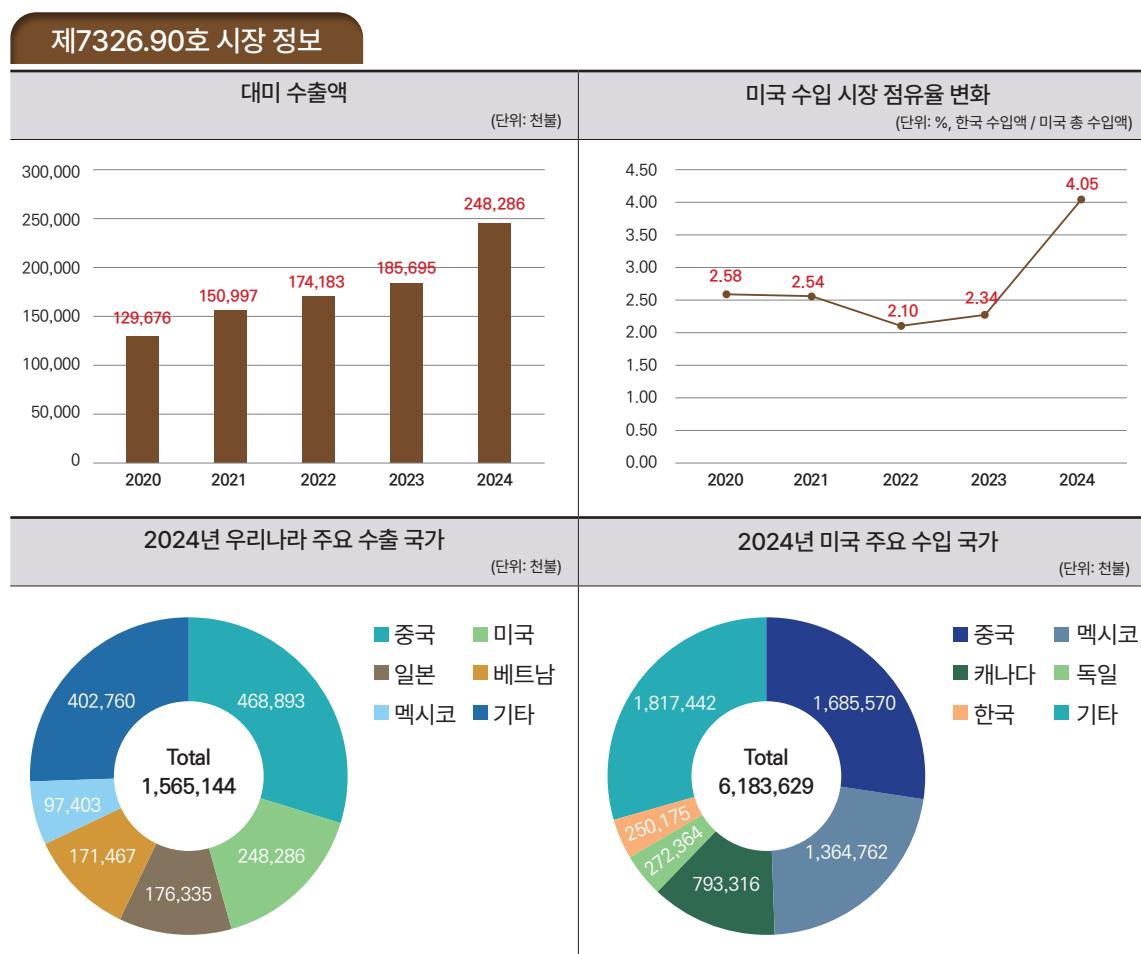
호스 클램프

요약

사례명	호스 클램프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
사례번호	NY N341003 (2024.07.15.)
사실관계	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슬리팅 스톡을 가공하여 밴드와 하우징을 생산한 뒤, 중국산 나사와 결합하여 최종 제품인 클립프를 만들고 세척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USMCA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</p> <p>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,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</p> <p>② 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(절단, 성형, 천공, 세척 등)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톡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, 캐나다에서 명칭, 성질,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이에 따라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, 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
근거법령	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(19 C.F.R. § 134) -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(19 C.F.R. § 102) 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 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 -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251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		
HS Code	제7326.9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0~8.6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(제7325호의 것은 제외한다)로부터 생산된 것	



◆ 자료: K-stat

(II) 판정사례

사례명 [호스 클램프]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

사례번호 NY N341003 (2024.07.15.)

사실관계

요청자 Murray Corporation (대리인: Sandler, Travis & Rosenberg, P.A.)

제품	제품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HSS 시리즈 스테인리스강 월드라이브 호스 클램프
	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밴드 하우징 나사
	용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내·외 호스 수리 및 이음, 누수 방지 고정용
	원재료 HTSU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: 7219 or 7220 중국산 나사: 7318
	완제품 HTSU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7326.90.8688

제조공정



01

원재료 및 부품
캐나다로 수입



02

밴드 및 하우징
제조



03

최종 제품
생산



04

미국 수출

상세공정

- 인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코일(슬리팅 스톡) 및 중국산 나사를 캐나다로 수입
- 슬리팅 스톡 절단
- SAE 호스 클램프 표준 J1508에 맞춰 밴드와 하우징 천공 및 성형
- 제조된 밴드, 하우징 및 중국산 나사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완성
- 세척 후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- ✓ 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
- ✓ 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및 분석

1

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**관련 법령 검토**

- ▣ 『19 C.F.R. § 134.1(b)』에 따르면,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, 생산,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,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,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해야 함
 - 단,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『19 C.F.R. § 102』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
 - 『19 C.F.R. § 102.11(a)』에 따르면,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른
 -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
 -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
 -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,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- ▣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,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, 이에 따라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명시된 제7326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
 - 이 상품군 이외의 다른 호에서 제7325호에서 제7326호까지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

판정 결과

- ▣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『19 C.F.R. § 102.20』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,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

2

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**관련 법령 검토**

- ▣ 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 기준에 따른
 -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: 새로운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 획득

❖ 참고 판례: *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, Inc.*, 27 C.C.P.A. 267 (1940)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* (1992)

❖ 참고 판례: *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*, 207 U.S. 556 (1908)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 (1982)

관련 법령 및 분석

-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(minor process)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, 1029 (1982),
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

-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W968434* (2007.01.17.)

❖ 참고 판례: *Ferrostaal Metals Corp. v. United States*, 11 CIT 470, 478, 664 F. Supp. 535, 541 (1987)

판정 결과

- ▣ 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(절단, 성형, 천공, 세척 등)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톡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, 캐나다에서 명칭, 성질,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
- ▣ 이에 따라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, 제201조, 제232조,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

결론

- ✓ 호스 클램프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칙에 따라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임
- ✓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또한 캐나다로 제201조, 제232조 및 제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III 시사점

- 해당 제품의 경우 캐나다에서 절단, 천공 및 성형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 수행되었으나, CBP는 최종 제품의 용도 및 기능이 호스 수리, 누수 방지 등을 위한 고정 및 조임에 있으므로, 해당 공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과 용도가 충분히 창출되었다고 판단함

IV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41003 (2024.07.15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41003>
-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(19 U.S.C. § 1304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1304&num=0&edition=prelim>

- CBP 19 C.F.R. § 102, <https://www.ecfr.gov/current/title-19/chapter-I/part-102/subpart-B/section-102.11>
- United States v. Gibson-Thomsen Co. (1940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1707/united-states-v-gibson-thomsen-co/?q=United+States+v.+Gibson-Thomsen+Co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. The United States (1908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96747/anheuser-busch-brewing-assn-v-united-states/?q=Anheuser+Busch+Brewing+Association+v.+The+United+States+1908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
- 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 (1983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2283980/uniroyal-inc-v-united-states/>